



한국의 세수 결정요인과 세수노력

과 목 명	경제 캡스톤 디자인
담 당 교 수	사공진 교수님
소속대학/학부	경상대학 경제학부
팀 명	쿠크다스
팀 장	지아름
팀 원	김은정, 박윤성, 박종훈, 최지혜

HANYANG UNIVERSITY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2장 기존연구의 검토	3
제 3장 현황분석	7
제 4장 실증분석	11
제 1절 모형설정	11
제 2절 자료에 대한 분석	12
제 3절 연구가설	12
제 4절 추정결과	14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17
참고문헌	18

제 1장 서론

현재 세계경제의 성장 하향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국내경제도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등 내부적 요인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세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복지지출비용을 증가시켜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확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2년에 24.8%로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3.7%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에 18.7%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7%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2012년에 6.1%에 이르며 OECD 평균 사회보장부담률은 9.0%이다. 이는 모두 OECD 34개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OECD의 평균치인 24.7%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OECD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복지수준, 인구구성의 요소,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조세의 추정된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의 세수 결정요인과 세수노력(Tax Effort)을 실증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려 한다.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수노력의 실증분석은 국가 세제개편 성공가능성의 척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어가면서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져가고,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조달의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한 자원조달은 대부분 조세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강한

반면 그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데 있다. 국민의 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조세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이나 여건에 비추어 낮은 조세부담을 유지하는 것 모두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의 비교를 통하여 세수 노력을 분석한다. 세수 결정요인과 세수노력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고자 한다. 설명변수로는 1인당 GDP,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영업자비율, 농촌인구 비율, 출생아 수 비율을 사용한다. 종속변수로는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추정된 부담률이 실제 부담률보다 높으면 세수노력(Tax Effort)이 1보다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실제 부담률이 추정된 부담률보다 높으면 세수노력(Tax Effort)이 1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수의 추가 확보 노력보다는 징세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해본다. 제 3장에서는 OECD 34개국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과 우리나라의 부담률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분석대상과 변수설명, 실증분석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마무리한다.

제 2장 기존연구의 검토

나성린·이영(2003)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을 비교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로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 GDP 대비 소득, 재산, 소비관련세비중, 1인당 GDP, 부양률, 인구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최고법인세율, 법정 최고소득세율 사용하였다. 국민부담률은 소득이 클수록,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규모가 작을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공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소득이 클수록,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부양률이 높을수록, 국가의 규모가 작을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공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부양률이 낮을수록, 국가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 정도가 낮을수록,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22.8%인데 비해 실제 수치는 26.4%이고 조세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17.4%인데 실제 수치는 2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의 경우 94년 이전까지는 적정 수준보다 낮았지만 94년부터는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국민부담률의 경우에는 98년 이전까지는 적정 수준보다 낮았지만 98년 이후에는 적정수준을 넘었다. 반면 사회보장부담률은 계속해서 적정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2004)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을 비교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 1인당 GDP, 부양률, GDP 대비수출입비중, 지방세 비중, 소비과세 비중,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2년 22.7%로 OECD평균인 26.6%보다 3.9%낮고 OECD 30개 국가들 중에서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지만, 우

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과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더한 국민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2년 28%로 OECD평균 36%보다 8%낮았고, 다른 OECD 국가들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조세부담률처럼 1985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며,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상승추세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에 비해 1인당 GDP는 절반 이하이며, 부양률 및 지방세 비중은 다소 낮은 수준에 속한다. 추정결과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 ITC지수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모두 종전 GDP 기준으로는 100을 초과하였으나 수정 GDP 기준으로는 100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모형에서는 수정 GDP기준으로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에 대한 ITC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전영준·안종범(2007)은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계획자(Social Planner)'를 상정하여 최적소비구조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조세부담률을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타적 가족모형(Altruistic Family Model)을 이용하여 최적소비조건을 도출하고 OECD 국가별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소비와 공공재 수요와 관련된 모수 설정을 통해 최적소비조건, 최적 공공재 공급수준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세대별·연령별 최적소비수준, 최적공공재 공급수준, 그리고 현행 제도하에서 각 세대에 부여하는 순이전지출을 감안하여 산출한 적정조세부담률은 2004년 현재 약 27.5%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제조세부담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하락하는 적정조세부담률 추이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비하여 높은 세부담을 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적정조세부담률 수준이 23~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태 외 2명(2013)은 Scully 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조세부담률을 추정하였다. 국가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GDP를 극대화하는 적정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1계 필요조건을 회귀방정식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후, 핵심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구하였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국가마다 인구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 조세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추정결과 인구규모가 동일한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며,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 인구가 증가할수록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와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 조세부담률이 상이할 것이라 가정한 명제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2011년 OECD 국가를 전제로 24.0%로 추계되었다. OECD 국가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19.9%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19.9%~24.0% 수준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3%임을 감안할 때, 조세부담률의 적정 수준에 이르려면 적어도 0.6%~4.7% 포인트 정도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성욱(2013)은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 수입-지출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 (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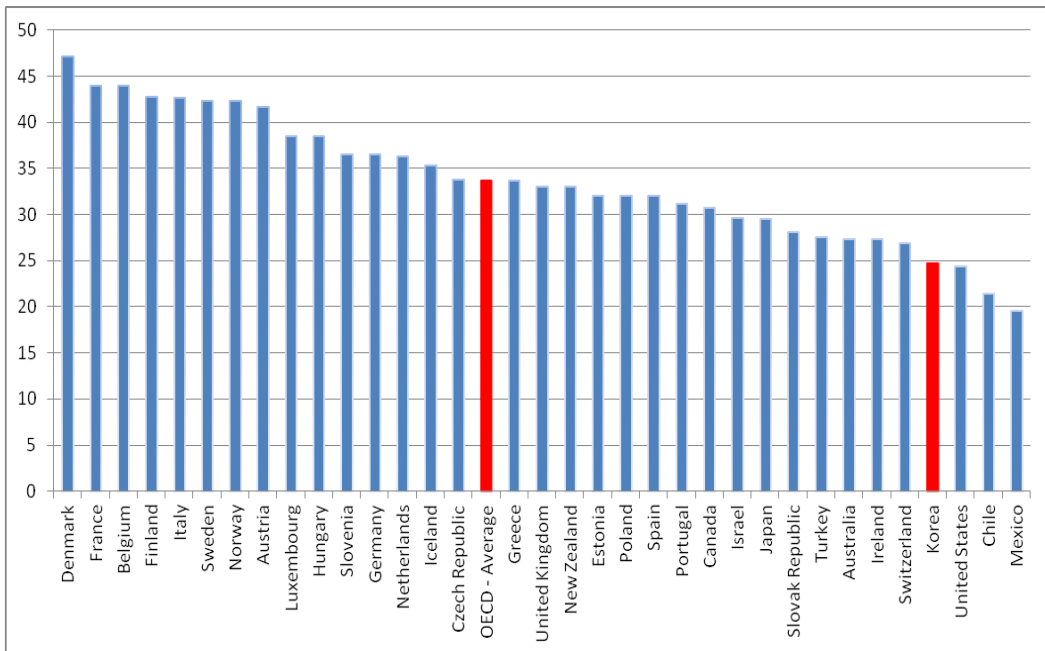
성현(2014)은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의 세수 결정요인과 세수노력(Tax Effort)을 실증분석 했다. 분석기간은 1971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독립변수로 1인당 GDP,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GDP 대비 수출입 비중과 농업부가가치 비중, 인구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의 적합성에 대하여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의 비교를 통하여 세수노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은 추정된 부담률이 실제 부담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경우 실제 부담률과 추정된 부담률과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 추정된 부담률이 실제 부담률보다는 높으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장 현황분석

본 연구의 주제인 한국의 세수 결정요인과 세수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세 가지 주요 요소의 현황을 알아보고, OECD 국가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순위를 알아볼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에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부담률에서 사회보장부담률을 제외한 조세로 거두어들이는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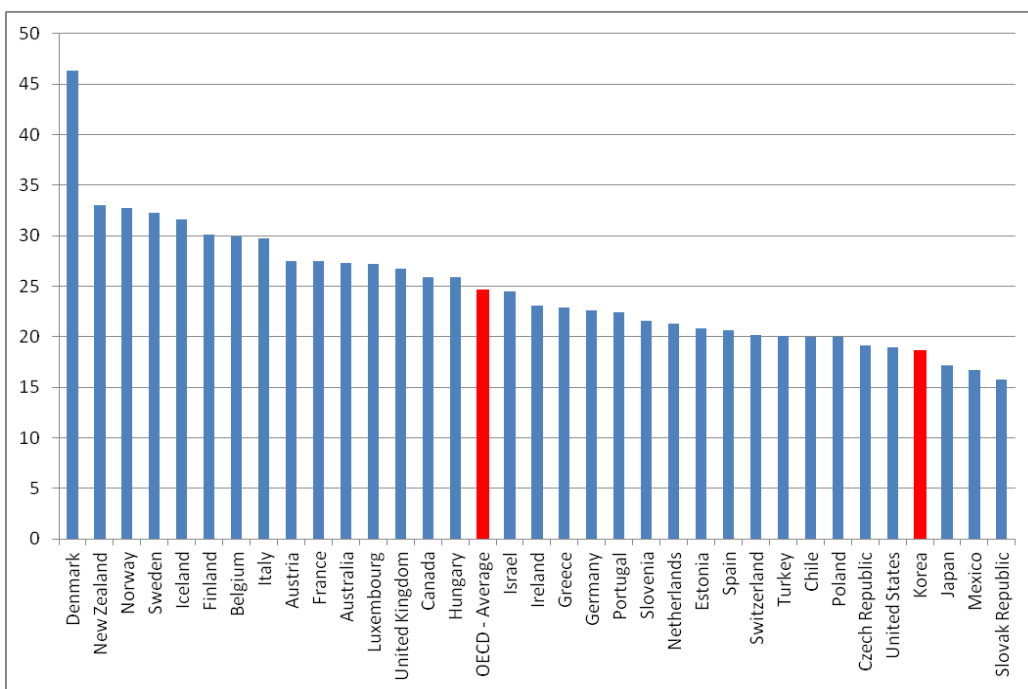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출처> OECD통계 2012년

먼저 [그림 1]은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을 나타낸다. OECD 전체 34개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3.7%이다. 덴마크가 47.2%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멕시코가 19.6%로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한다. 한국은 24.8%로 터키(27.6%), 호주(27.3%), 미국(24.4%), 칠레(21.4%), 멕시코(19.6%) 등과 함께 국민부담률이 OECD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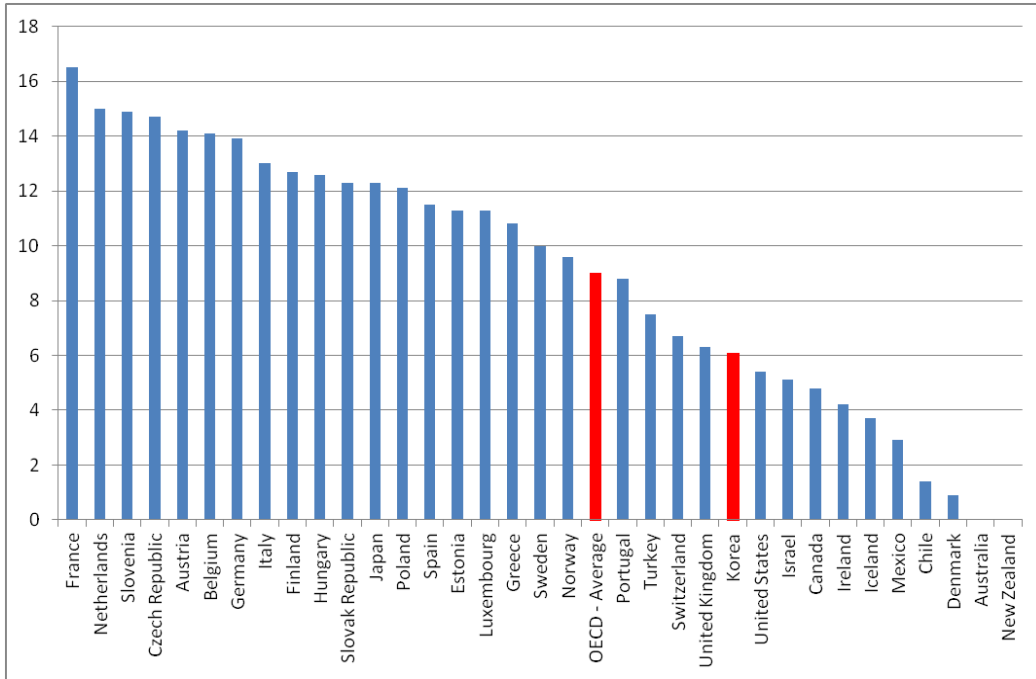
[그림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출처> OECD통계 2012년

위의 [그림 2]는 2012년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을 나타낸다. OECD 전체 34개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24.7%이다. 국민부담률과 마찬가지로 덴마크가 46.3%로 제일 높으며, 슬로바키아가 15.8%로 가장 낮다. 한국의 경우 18.7%로 폴란드(20.0%), 터키(20.1%), 체코(19.1%), 칠레(20%), 미국(19.0%), 멕시코(16.7%), 일본(17.2%) 등과 함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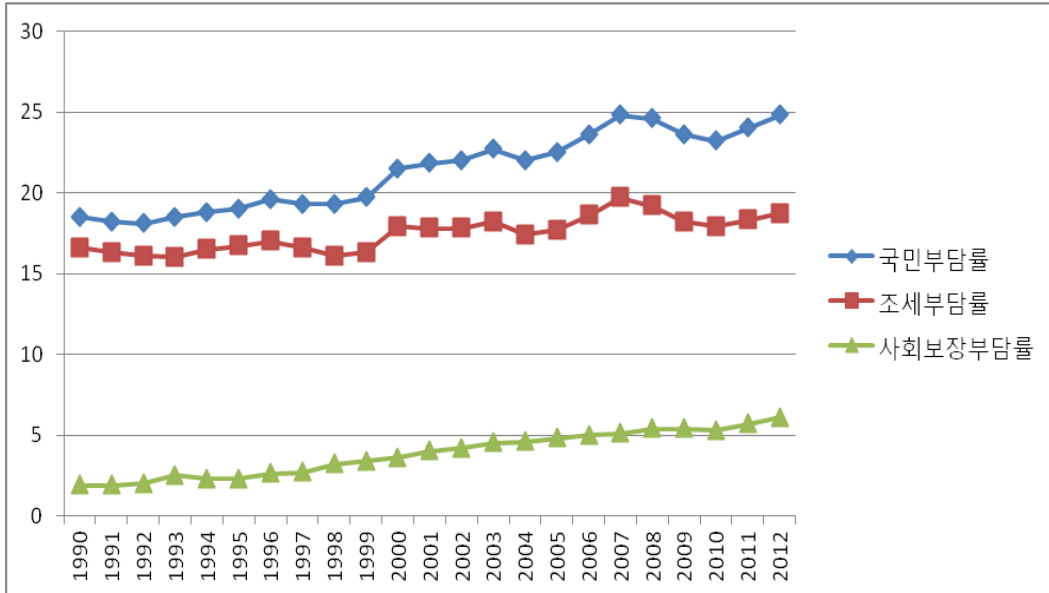
[그림 3] OECD 국가의 사회보장부담률



<출처> OECD통계 2012년

위의 [그림3]은 2012년 OECD 국가의 사회보장부담률을 나타낸다. OECD 전체 34개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9.0%이다. 프랑스가 16.5%로 가장 높으며, 뉴질랜드와 호주가 0%로 가장 낮다. 한국의 경우 6.1%로 영국(6.3%), 이스라엘(5.1%), 미국(5.4%), 캐나다(4.8%), 아일랜드(4.2%), 아이슬란드(3.7%), 멕시코(2.9%) 등과 함께 사회보장부담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림4] 한국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출처> OECD통계 1990-2012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0년대까지 20% 미만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 21.5%로 2012년에는 24.8%에 이르고 있다. 조세부담률 또한 2000년 17.9%로 2012년에는 18.7%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부담률은 1980년대까지 1% 미만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3.6%, 2012년에는 6.1%에 이르고 있다.

제 4장 실증분석

제 1절 모형설정

본 절에서는 한국의 세수결정요인과 세수노력을 위한 추정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Y_t = b_0 + b_1 X_{1t} + b_2 X_{2t} + b_3 X_{3t} + b_4 X_{4t} + b_5 X_{5t} + u_t$$

	변수	변수설명	년도	출처
종속변수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	1990-2012	OECD
	Y_t 조세부담률	GDP 대비 조세 총액의 비중	1990-2012	OECD
	사회보장부담률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	1990-2012	OECD
독립변수	X_1 1인당 GDP	1인당 GDP	1990-2012	통계청
	X_2 65세 이상 인구비율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90-2012	통계청
	X_3 자영자비율	총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	1990-2012	통계청
	X_4 농촌인구비율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	1990-2012	WDI
	X_5 출생아비율	총 인구 대비 출생아 비율	1990-2012	통계청

제 2절 자료에 대한 분석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3년의 기간으로 되었다. 자료는 OECD 통계자료와 통계청, World Bank에서 회귀모형에 사용될 변수를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은 OECD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인 1인당 GDP, 65세 이상 인구, 자영업자 수,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촌인구수는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국민부담률	21.3087	5.3069	18.1	24.8
조세부담률	17.4609	1.0902	16	19.7
사회보장부담률	3.8478	1.8060	1.9	6.1
1인당 GDP	14,106	35353266.4	6,614	24,445
65세 이상 인구비율	0.07987	0.02058	0.051	0.117
자영업자비율	0.0888	0.0041	0.0806	0.0949
농촌인구비율	0.2021	0.02435	0.175281568	0.261555633
출생아비율	0.0121	0.00280	0.008918	0.016419

제 3절 연구가설

경제가 발전하면 담세능력(Taxable Capacity)이 높아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과 조세부담률은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의 보험금 납부자가 감소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는 감소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부양인들에 대한 급여 지불을 위하여 일반 재원인 조세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으로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인데, 2040년에 예상된 비중은 약 32.3%에 달한다. 이로 인해 부양인들에 대한 급여 지불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조세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과 조세부담률은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자는 소비가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데도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소득과 달리 자영자의 소득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영자들은 높은 소득세율로 낮아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탈세할 동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불분명한 자영자 비율과 조세부담률은 음(-)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은 조세의 징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농어촌 인구의 급감과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제 악화 사정을 고려하여 도 및 시의 읍□면 지역, 시의 녹지지역 등에 거주하는 세대는 보험료의 22% 감경 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농민들의 농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인구의 조세부담률은 도시지역인구의 조세부담률보다 낮다. 따라서 농촌인구비율과 조세부담률은 음(-)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가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인구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출생아비율과 조세부담률은 음(-)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된 부담률이 실제부담률보다 높으면 세수노력(Tax Effort)이 1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수에 추가로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실제 부담률이 추정된 부담률보다 높으면 세수노력이 1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수의 추가 확보 노력보다는 징세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의미한다.

제 4절 추정결과

추정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1인당 GDP	6.74*	1.037	8.22*	1.336	-1.48*	-0.629
65세 이상 인구비율	155.3***	4.268	99.81***	2.898	55.49***	4.22
자영자비율	-210.01***	4.653	-189.26***	4.43	20.75*	1.272
농촌인구비율	-17.31**	1.7	-20.14**	2.089	-2.82*	-0.767
출생아비율	-289.87**	1.882	-378.98***	2.599	-89.1*	-1.601
Observations	23		23		23	
R-squared	0.975818		0.894544		0.990721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최소자승법을 실시한 결과, 1인당 GDP는 국민부담률에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부담률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곧 하강하는 출렁이는 형태의 모습을 띄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경우에는 국민부담률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인들에 대한 급여 지불을 위하여 일반 자원인 조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영자의 비율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동기가 높아 납부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농촌인구비율도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은 조세의 징수가 어렵고 농산품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비율도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인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의 경우에도 1인당 GDP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 역시 매년 증가하는 1인당 GDP와는 다르게 매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조세부담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자영업자 비율과 조세부담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가 자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탈세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농촌인구 비중도 조세부담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은 조세의 징수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또한 조세부담률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출생아로 인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인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에도 1인당 GDP는 사회보장부담률을 설명하는 타당한 변수가 될 수 없다.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 1인당 GDP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1인당 GDP가 상승할 때는 고정되거나 소폭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65세 인구는 증가추세의 사회보장부담률과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자영업자비율은 사회보장부담률을 설명하는 타당한 변수가 될 수 없다. 자영업자비율은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사회보장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농촌인구비율 역시 사회보장부담률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농촌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생아비율은 사회보장부담률을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수준과 인구를 고려하면 19.9%가 적정 조세부담률로 나타난다.¹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2005년 17.7%에서 2006년 18.6%로 18%를 넘어 선 후, 2007년 19.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새로운 재정정책 기조로 선택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없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2008년에는 19.2%

¹ 김성태·이한식·임병인(2013)

로 하락하고, 2009년 18.2%, 2010년 17.9%로 하락하여 왔다. 최근 2011년 18.3%, 2012년 18.7%로 상승하였으나 추정된 적정 조세부담률을 고려할 때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다소 상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수노력(Tax Effort)은 2011년 실제 부담률 18.3%, 2011년 추정된 부담률 19.9%로 0.92이다. 추정된 부담률이 실제 부담률보다 높아 세수노력이 1보다 낮으므로 추가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의 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의 비교를 통하여 세수노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적정 조세부담률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8.3%임을 감안할 때, 조세부담률의 적정 수준에 이르려면 적어도 1.6% 포인트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실제 부담률 보다 추정된 부담률이 높아 세수의 추가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재정정책 기조로 선택하고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없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조세부담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추정한 적정 조세부담률을 고려하면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다소 상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조세정책이 역주행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증세 아닌 증세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과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역진성을 취하면서 기업과 자산가만을 위한 조세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증세정책을 어느 한 계층에 한하지 않고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해 소득에 있어서의 공평한 과세를 이루어야 한다.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정책의 공정성 또한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 확대로 재정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조세정책의 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증가하는 사회복지 지출수요를 과연 증세로 재원조달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나성린·이영(2003), "한국의 적정 조세부담률," 『공공경제』, 제8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pp. 95-116.
- 박형수(2004),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재정포럼』, 제10권 제6호 통권 제96호, 한국조세연구원, pp. 30-57.
- 안종범(2004),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추계," 『한국경제의 분석』, 제10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pp. 161-214.
- 전영준·안종범(2007),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제13권 제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 111-156.
- 임양택(2011), 「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한양대학교출판부.
- 김성태·이한식·임병인(2013),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률 모색," 『재정정책논집』, 제15집 제2호, pp.61-90
- 김성욱(2013),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3호, pp.77-115
- 성현(2014), "세수 결정요인과 세수노력에 대한 실증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